

의안번호	2202663
의 퇴 인	이해민 의원
회 답 일	2024. 8. 29.
추 계 번호	24B264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 (안 제34조의3 신설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3(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의 실태조사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(이하 “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”이라 한다)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4조의3(정보통신망 이용 · 제공의 실태조사) 신설	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(안 제34조의3 신설)
 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유사 실태조사 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34조의2¹⁾에 따라

1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, 2023년 5억 원을 집행한 바 있음

[표 2]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

- (대상)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신고 간주 사업자(1만 7천여개社) 중 휴폐업 사업자 및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5천여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- (주요내용)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현황, 재무 및 인력 현황, 연구개발·보유기술 현황,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조사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(안)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(안)

구분	내용
조사대상	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상 신고·등록되어 있는 모든 ‘부가통신사업자’(약 1.7만개, ’23.12.) 및 기간통신사업자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(43개, ’23.5.)
조사방법·내용	- ‘일반현황’ 조사(1단계)와 ‘심층현황’ 조사(2단계)로 구분 ① (일반현황 조사) 전체 조사 대상에게 정보통신망(인터넷망) 이용·제공을 위해 체결 중인 망 이용·제공계약 현황, 트래픽 발생량 등 설문조사 ② (심층현황 조사) 일반현황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국내 정보통신망(인터넷망) 트래픽 발생량 상위 50위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으로, 망 이용계약 형태, 계약 용량, 계약 기간, 이용대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면접조사 -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내용을 교차 검증
연간 소요예산	약 5억원 - 망 이용·제공 일반현황 조사 2.5억원, 망 이용·제공 심층현황 조사 2.5억원

주: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, 방법, 항목 등을 도출한 것으로 향후 조사 설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표 4]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·제공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